



서대문구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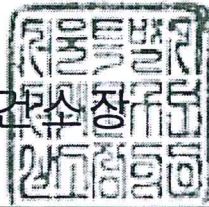
수신자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
(경유)

제목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횟수 기준 및 소독실시 철저 안내

1. 구정 발전과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시설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소독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타구 소독업체도 가능함)로부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역소독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된 소독업체(타구 소독업체 가능)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관련 소독횟수 기준 1부. 끝.

서대문구보건소장



주무관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 장진섭 지역건강과장 02/11 김정수

협조자

시행 지역건강과-2614 (2019.2.11.) 접수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86 /전송 02-330-1840 / melano@sdm.go.kr / 대시민공개

소독횟수 기준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